#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46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서천호·이종배·엄태영

조인철 · 이종욱 · 김기현

박덕흠 • 이양수 • 김종양

권영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이제한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 법률 제 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 사육제한구역 내의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로 이전을 허용할 수 있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지역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언어 동일 면적 이내로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